

[부칙 제3조(대회사용구, 배트) 시행세칙]

대회사용구, 배트



제1장 대회사용구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협회’)가 주최하는 대회에서 사용하는 야구공, 소프트볼(이하 “대회사용구”라고 한다)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대회사용구를 공인하고 경기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및 의무]

- 협회는 공급 사업자가 제3조에 따라 공인신청한 대회사용구가 제4조 제조기준에 적합할 경우 대회사용구로 공인하며 공인 사업자라 칭한다.
- 협회가 주최하는 대회 경기에는 공인 사업자가 공급한 공인 대회사용구를 사용한다.

제3조[공인의 신청]

공급 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류 및 대회사용구 모델별 견본을 협회에 제출하여야한다. 단 신청내용 중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즉시 공문으로 협회에 제출한다.

- 가. 대회사용구 공인신청서 (협회 양식)
-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다. 공장등록증 사본(위탁 생산의 경우 제외)
- 라. 공의 상세 제조공정(사진 및 설명 첨부)
- 마. 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의 명세(원산지 포함) 및 단가
- 바. 모델별 협회 납품 가격표 (협회 양식)
- 사. 모델별 견본 2타(내부 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개 구 1개 포함)

<위탁 생산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가. 위탁 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원
- 나. 위탁 또는 납품 계약서 사본
- 다. 위탁 회사의 전년도 생산 실적
- 라. 위탁 회사의 공장등록증 사본
- 마. 위탁 회사의 공장책임자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 위탁 생산의 경우 공인구에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 해외 공장으로부터 위탁 생산할 경우, 수입 후 15일 이내에 세관 직인이 날인된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조기준)

[야구]

1. 공인 신청한 대회사용구의 반발력이 협회가 의뢰한 전문평가업체에 의한 검사결과 그 평균반발 계수가 0.4134에서 0.4374이내이어야 한다.
2. 대회사용구의 고무심은 ‘야구공 시험방법 및 요구조건’규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대회사용구의 솔기폭은 16분의 6인치(9.524mm)이하, 실밥 수는 108이어야 한다.
4. 대회사용구의 둘레길이는 중·고등용은 9인치~9 $\frac{1}{4}$ 인치(229mm~235mm), 초등용은 8 $\frac{3}{4}$ 인치~9인치 미만(222mm~228mm) 이어야 한다.
5. 대회사용구의 중량은 중·고등용이 5온스~5 $\frac{1}{4}$ 온스(141.7g~148.8g), 초등용은 4 $\frac{3}{4}$ 온스~5온스 미만(134.6g~141.7g) 이어야 한다.
6. 전기 각 호에 규정한 사항 이외는 야구규칙의 일반규칙을 적용한다.

7. 대회사용구의 양모 함유량은 고교·대학 100%, 초등·중학·동호인은 50%(생산 과정 중 10% 이내의 오차 범위 인정)로 한다.

[소프트볼]

1. 대회사용구의 중심은 섬유질로 된 솜, 코르크의 혼합, 고무, 폴리우레탄 혼합 등의 재질이어야 하며, 공의 겉면은 말가죽, 소가죽, 합성재질이어야 한다.
2. 대회사용구의 둘레는 305mm(12inch)이며, 3mm의 오차(302mm~308mm)는 허용한다.
3. 대회사용구의 중량은 178g에서 198.4g이내여야 한다.
4. 대회사용구의 색상은 흰색 또는 노란 형광색이어야 한다.
5. 실밥의 색상은 흰색 또는 빨간색이어야 하며, 실밥 수는 최소 88개 이상이고 2열로 박음질되어 있어야 한다.
6. 대회사용구을 0.64cm 압축할 때 요구되는 하중이 경식볼(150kgf~170.1kgf), 연식볼(10kgf 이내) 이어야 한다.

제5조(수시검사) 협회는 제4조(제조기준)에 의거 대회사용구 검사를 수시로 행한다.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1. 검사는 협회 주최 전국대회에 공급된 대회사용구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샘플을 수거한 후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2. 수시 검사 비용은 협회가 부담하나, 제4조에 미치지 못하여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비용은 공인사업자가 부담한다.

제6조(공급 사업자의 의무)

1. 공급 사업자는 매년 협회가 정한 기간 내에 공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공급 사업자는 협회로부터 공인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본 협회가 정하는 공인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공급 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급 사업자는 제품의 하자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공급 사업자는 본 협회의 제조공정 및 공인구에 대한 수시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공급 사업자는 본 협회의 제조공정 및 공인구에 대한 수시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의 재제 및 취소)

1. 협회는 공급 사업자가 신청한 대회사용구가 상기 제4조(제조기준) 및 제6조(공급 사업자의 의무)를 고의로 위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공인을 취소한다.
2. 공급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제조를 중지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공인을 승인 받은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인을 즉시 취소한다.
3. 대회사용구 검사 결과가 제4조(제조기준)과 다를 경우, 협회는 공인심사 위원회를 통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공인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1) 공인 신청 시 제4조(제조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 ① 1차 적발 시 : 재시험 의뢰
 - ② 재시험 의뢰 결과, 불합격 시 : 당해 연도 공인신청 자격박탈
 - 2) 수시 검사 결과가 제4조(제조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① 1차 적발 시 : 재시험 의뢰

② 재시험 의뢰 결과, 불합격 시 : 제재금 400만원 부과, 3차시험 의뢰

③ 3차시험 의뢰 결과, 불합격 시 : 당해연도 공인취소

▶ 1개의 사업자가 다수의 모델(야구: 19세, 15세, 13세 / 소프트볼: 경식, 연식)을 신청했을 경우, 시험결과 부적합 받은 모델만 재시험 혹은 공인에서 제외된다.

▶ 당해 연도 소프트볼 대회사용구 공급사업자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적발에 대한 조치를 공인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재시험 의뢰 또는 제재금 부과를 받은 공인 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5. 공급 사업자는 포장 상태 불량, 협회가 요구하는 표시 의무(원산지, 제조 일자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는 않는다.)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 즉각 시정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재제한다.

6. 기타 부정한 방법(협회 임·직원 결탁 및 금품 제공 등)으로 공인 승인 절차를 진행 또는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공인 사업자의 공인을 즉시 취소하며, 공인취소로 인한 대회사용구 공급은 당해 공인사업자 중 추첨을 통해 정한다.

7. 공인이 취소된 공인 사업자는 공인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공인이 취소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본 협회에 공인을 받을 수 없고(사업자 변경을 통한 공인신청 또한 불가) 해당 기간 및 명시된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해선 공인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이의 신청) 공인심사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대하여 해당 공인 사업자

는 제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공인표시) 대회사용구에는 (예시)와 같이 협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대회사용구 (예시)

- 협회 로고 각인
- 글씨체 : HY견고딕



★OFFICIAL BALL★

KBSA

제10조(공인의 효력기간) 공인의 효력 기간은 본 협회의 공인 승인 통보를 받은 당해 연도로 한다.

제2장 배트 (목재, 비목재)

제1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협회’)가 주최하는 대회에서 사용하는 경기용 배트(목재, 비목재)에 대한 제반사항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배트(목재, 비목재)를 공인하고 경기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적용 및 의무)

1 협회에 야구종목 고교·대학·일반 및 실업 선수는 본 협회가 주최하는 모든 전국대회에 반드시 본 규정에서 승인된 목재배트를 사용해야 하고 야구 종목 초등·중학 선수 및 생활체육 동호인, 소프트볼 선수 및 동호인은 본 협회가 주최하는 모든 전국대회에 반드시 본 규정에서 승인된 비목재 배트를 사용해야 한다.

2. 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팀이나 선수에 대하여 야구종목은 ‘야구배트 사용에 따른 징계세칙’을 적용하며 소프트볼종목은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공인의 신청)

1. 신청조건 : 배트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공인을 신청할 경우 제15조[제조기준]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신청절차 : 전 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공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류 및 배트 견본을 협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목재 배트

- 가. 배트(목재) 공인신청서 (협회양식)

-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다. 전년도 납세 증명원

라. 국내 공장 등록증 사본

(배트가 국내위탁제조에 의한 경우는 위탁 공장의 등록증 사본)

마. 제품별 품격 현황 및 견본 각 2본(일반 1, 커프트 1)

바. 본 협회 납품 가격표 (협회양식)

사. 배트의 제조공정의 상세한 현황(배트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의 명세 포함)

* 배트에 도포하는 도료정보 제출(견본배트 포함, 업체에서 제조판매되는 모든배트)

아. 사업자가 외국회사의 배트를 위탁하는 경우는 위탁회사에 대한 자료

자. 외국산 배트에 대한 공인을 신청하는 국내 수입 판매자는 국내독점 판

매권을 증명할 수 있는 영문 혹은 국문 번역이 된 본사와의 계약서

(한국 총판권)를 제출해야 한다. 단,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에

서 공인된 제품에 한한다.(원본대조필 날인, 당해연도 내용 포함)

• 비목재 배트

가. 배트(비목재) 공인신청서 (협회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전년도 납세 증명원

라. 제품별 품격 현황 (협회양식)

마. 본 협회 납품 가격표 및 납품현황(년도, 생산, 판매, 재고수량)(협회양식)

바. 외국산 배트에 대한 공인을 신청하는 국내 수입 판매자는 국내독점 판

매권을 증명할 수 있는 영문 혹은 국문 번역 계약서(한국 총판권)를

제출 (원본대조필 날인, 당해연도 내용 포함)

제14조(공인의 승인) 협회는 13조[공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한 배트가 제15조[제조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공인배트 제조·판매업자로서 공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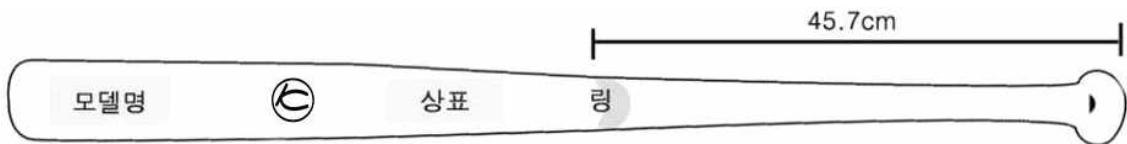
제15조(제조기준)

[목재]

1. 표면의 마무리 : 방습(防濕)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포가공(塗布加工)은 허용되나 반발력에 영향을 미치는 수지(樹脂)나 기타 일절의 경화제 및 강화제가 목질내부에 침투, 가공되지 않아야 한다.
2. 표면에 도포하는 도료는 투명(목재 고유의 색으로 흰색 불가), 빨간색과 구분되는 갈색, 짙은회색, 검은색에 한하며, 반드시 나무의 결이 보여야 한다. 또한 인가한 색 중 2가지색(투톤)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며, 단, 2가지색(투톤)으로 할 경우 배트의 손잡이 끝부분부터 45.7cm 이내를 경계선으로 한다. 배트의 소재가 메이플 등의 산공재일 경우 배트의 손잡이 부분에 한하여 반드시 나무의 결이 보여야 한다. 이 경우 배트의 끝부분에서 45.7cm~44.2cm를 경계선으로 한다.
3. 표면의 표시 등의 크기와 위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① 모델명 및 품번, 재종, 기타 문구
 - 위치: 배트의 앞 부분(지름이 굵은 부분)
 - 크기: 세로(종) 5cm 이하, 가로(횡) 9.5cm 이하
 - ② 링(1개만 허용)
 - 위치: 손잡이에서 45.7cm 지점
 - 크기: 폭 3.5cm 이하
 - ③ 마크 또는 상표
 - 위치: 링과 배트 모델명 및 품번, 재종 표시 사이
 - 크기: 세로(종) 6.5cm 이하, 가로(횡) 12.5cm 이하
 - ④ 공인 인(印)

-위치: 상표로부터 배트 앞쪽(지름이 가장 굵은 부분)으로 2cm 떨어진 지점

⑤ 전기 1, 3, 4는 배트의 동일 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상기 1,2,3항의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야구규칙(3.02)과 본 협회의 결정에 따른다.

* 야구규칙 3.02 주요내용

- 배트는 겉면이 고른 등근 나무로 만들어야 한다.
- 가장 굵은 부분의 지름이 2.61인치(6.6cm) 이하, 길이는 42인치(106.7cm) 이하여야 한다.
- 배트는 하나의 목재로 만들어져야 한다.(접합배트 **사용불가**)
- 커프트 배트(끝부분을 움푹하게 도려낸 방망이)는 도려낸 부분의 깊이가 $1\frac{1}{4}$ (3.2cm) 이하, 지름이 **1인치(2.5cm)~2인치(5.1cm)** 이내, 움푹하게 파낸 단면은 둥글어야하고, 다른 물질을 붙여서는 안되며 소재를 도려낸 것으로 그쳐야 한다.

[비]목재]

1. 배트 33인치 기준 배트의 스위트 스팟(Sweet spot) 지점이라 할 수 있는 152mm에 1.21mm의 압축 후 하중 측정한 값이 아래 기준표 이상으로 제조되어어야 한다.

	알루미늄	복합재(카본)
13세이하(초등)	2,600N	2,990N
16세이하(중등) / 생활체육	3,400N	4,100N

2. 배트에 표시되어있는 사양이 아래와 같은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제조되어야 한다.

- 길이 : ±0.2in ($\pm 5.1\text{mm}$)
- 무게 : ±0.7oz ($\pm 19.8\text{g}$)
- 배럴지름 : +1mm

3. 캡과 그립을 제외하고 배트의 기본 배럴 외에 사용자가 탈부착이 가능한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하면 안된다.

4. 상기 1,2,3항의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야구 규칙(3.02)과 본 협회의 결정에 따른다.

* 야구규칙 3.02 주요내용

- 굵기 : 2.61인치(6.6cm)이하
- 길이 : 42인치(106.7cm)이하

※ 소프트볼 배트의 경우 국제연맹(WBSC 또는 ISF)에서 인증한 배트에 한해 사용. (2020년부터 시행/ 2017년 감독자회의 요청사항)

제16조(수시검사) 협회는 공인제조업자가 제조한 배트 및 공인 승인한 배트에 대해서 제15조[제조기준]에 의거, 제조공정을 포함 수시 검사할 수 있으며, 공인 사업자는 수시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공급 사업자의 의무)

[목재]

1. 공급 사업자는 매년 공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공급 사업자는 협회로부터 공인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기일 내에 본 협회가 정하는 공인료를 본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3. 공인을 통보 받은 공급 사업자는 시합용 배트에 대하여 제15조[공인의 승인]의 공인 인(印)을 받아야 하며 공인 인(印)을 받은 배트는 협회와 협의 된 판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공급 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급 사업자는 배트의 공급 수량 부족 또는 불량 배트 등의 사유로 구입자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사업자의 개인적 사유로 생산량을 조절해야 할 사유가 발생 될 경우 즉시 협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6. 공급 사업자는 본 협회의 제조 공정 및 야구 배트에 대한 수시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공인을 승인받은 공급 사업자는 국제대회에서의 사용을 위해 세계야구 소프트볼연맹(WBSC)에 공인을 신청할 수 있다.

[비목재]

1. 공급 사업자(제작업체 또는 수입총판업체만 가능)는 공인받고자 하는 모델별로 1회 공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동일모델이라도 in, oz, 배럴지름, 색상이 다를 경우 모든 시험성적서 제출해야 한다.
ex) 동일모델 32in/27oz, 33in/28oz 경우 각각의 시험성적서 제출 - 한번 공인 받은 배트는 3년간 공인효력, 3년 이후 재공인 미 신청 시 사용 금지
[공인효력기간은 통보시점 월이 아닌 연도로 구분 (2020년도(1~12월) 공인 시, 2022년도 12월 효력 종료)]
2. 공급 사업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용품시험소 테스트를 통과한 배트 시험성적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테스트 비용 사업자 부담)
3. 공인 승인 통보를 받은 후 협회가 제공한 공인인증 마크를 부착한다.
① 공인신청 테스트 시점 기준으로 제작된 배트에 한에 스티커 부착(배트

제작 재원(수량) 제출) ② 공인 승인 이후 제작 시 공인 인(印) 각인 제작

* 동일모델 제품일지라도 공인승인 이전 제작된 제품 사용불가(제품 제작년도 기준)

4. 공급 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급 사업자는 본 협회의 제조 공정 및 배트에 대한 수시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공인의 제재 및 취소)

1.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공인이 취소된 사업자는 공인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① 제13조[공인의 신청] 관련 서류가 미비 혹은 제15조[제조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17조[공급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② 배트의 제조·판매에 관련한 부정, 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③ 사업자가 해당 공인배트의 제조·판매를 중지했을 경우

④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었거나, 부정한 수단에 의해 공인을 받았을 경우

⑤ 수시검사를 거부하거나, 수시검사 결과가 제15조[제조의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⑥ 외산배트의 경우 WBSC 공인이 취소된 경우

2. 배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협회는 공인심사위원회를 통해 다음 각 호에 의거, 제재를 결정하여 해당 공인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1) 공인 신청 시 규정 위반의 경우

① 1차 적발 시 : 재시험 의뢰

② 재시험 의뢰 결과, 불합격 시 : 당해 연도 공인신청 자격박탈

2) 시즌 중 수시 검사 결과 규정 위반의 경우

① 1차 적발 시 : 제재금 300만원 이내

② 2차 적발 시 : 공인 취소

3. 해당 공인 사업자는 공인심사위원회의 제재 결정(제재 및 벌금부과)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규정 외 사항에 대해선 공인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9조(이의 신청) 공인심사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대하여 해당 공인 사업자는 제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협회에 제출한다.

제20조(공인 마크 표시)

1. 협회는 공인사에서 제조한 배트 중 경기용 배트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협회를 상징하는 별도의 마크를 부착한다.

2. 공인 마크는 제15조[제조기준]에서 언급된 부분을 피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본 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공인 마크가 없는 배트를 협회 주최대회에서 사용할 수 없다.

① 목재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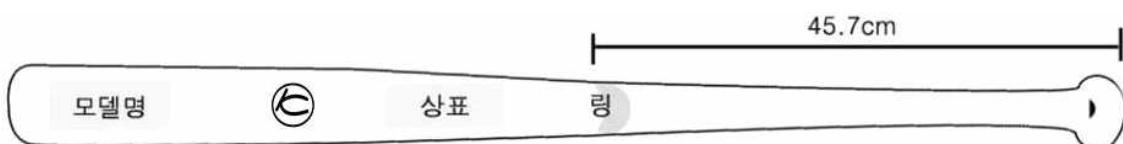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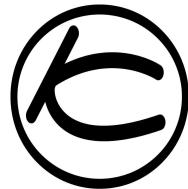
가. 국산 : 공인마크 필수각인

나. 외산 : 공인마크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가능

② 비목재배트 : 국, 외산 구분없이 스티커 혹은 배트 각인 필수

※ 목재 배트 공인 인(印)

- 크기 : 가로 X 세로 2.5cm
- 색상 : 상품표시와 동일한 색으로 소인한 자연색,
 흰색, 은색, 금색, 검정색 중 한 가지 색으로 한다.
- 위치 : 상표로부터 배트 앞쪽(지름이 가장 굽은 부분)
 으로 2cm 떨어진 지점



※ 비목재 배트 공인 인(印)

- 크기 : 가로 5cm, 세로 2cm
- 색상 : 검정색 (제공된 이미지)
- 위치 : 손잡이 부분 상단 5cm



* 협회 공인신청을 하기 위해 테스트 기간에 제작된 배트에 한하여 스티커 제공

(공인 이후 제작 시 공인 인(印) 각인 후 제작)

* 공인 승인 이전 제작된 제품은 사용불가 (서류제출 시 최초제작 및 수량 파악)

제21조(공인의 효력기간)

1. 사업자는 매년 공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공인의 효력 기간은 본 협회의 공인 승인 통보를 받은 당해 연도로 하며, 비목재 배트의 경우 공인 효력 기간은 3년이다.
2. 협회의 마크가 표시된 배트에 대하여는 공인이 취소된 회사의 제품일지라

도 제21조(공인의 효력기간) 제1항의 기간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단, 배트의 문제로 인하여 취소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3. 공인이 취소된 공인 사업자는 공인심사위원회 제재 결과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본 협회의 공인을 받을 수 없으며(사업자 변경을 통한 공인신청 또한 불가), 명시된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해선 공인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비목재 배트의 경우, 취소된 모델을 제외한 제품에 대해선 공인 효력기간은 유효하나, 추가 공인 및 연장신청은 재제기간 이후 가능하다.